



금천구체육회



수 신 금천구검도회

(경유)

제 목 제3대 금천구검도회 회장선출 방법 승인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금천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제2항 「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구종목단체는 구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구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」
- 나. 금천구검도회 금검회 2023-23호(2023. 11. 10.) 「금천구검도회 회장선출방법 승인 요청 건」

- 2. 위와 관련하여 제3대 금천구검도회 회장선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회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아울러,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권장(안)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거나 금천구체육회 정관 제34조(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) 및 금천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경우 인준이 불가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단체명	요청사항	사유	결과
금천구검도회	총회를 통한 회장 선출	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어려움	승인

끝.

금천구체육회장



★담당 이유미 사무국장 조민경 회장 11/21 공경택

협조자

시행 금천체-1154 (2023.11.21.) 접수 ()

우 08657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22 / http://geumchun.or.kr

전화 02-809-7795 /전송 02-803-7796 / geumchun9@hanmail.net / 공개